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명과 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용자대상)

- ① 용자대상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부산직할시지부 사하구지회(이하 “구지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마을 및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용자받아 전액 상환되지 않은 마을 및 가구제외)

제10조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용자금의 반환)

3. 사하구 이외지역으로 전출하였을때

제14조 (세입세출)중 “세출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를 “세출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및 가구의”로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폐지한다.

제18조를 제15조로, 제19조를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직할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결손처분)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